

제429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2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39)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11)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693)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07)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80)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4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4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4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4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4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4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4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39) 4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4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4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4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17)	4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4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4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4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4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11)	4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4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693)	4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07)	5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80)	5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5

(14시05분 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20)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876)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92)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39)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11)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693)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07)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80)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14시06분)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탄소중립기본법 24개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내용별로 끓어서 목차를 구성했고요. 먼저 목차 1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 시 감축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항목 먼저 보시면,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매년 점검, 그 결과보고서의 작성·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결과보고서 작성·공개를 매년 6월 말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니은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현행 규정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서왕진 의원님 안입니다.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항에 대해서는 우측에 보시면 서왕진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일단 통합의견을 작성했는데요. 기역 내용에 해당되는 박지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9쪽에 환경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서왕진 의원님 안을 반영한 통합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항목입니다.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 배출량의 연도별 감축목표 미부합 시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사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계획 작성 및 위원회 제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역입니다. 서왕진 의원님 안은 제출 항목을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 감축목표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계시고요.

다음 항목, 온실가스 감축계획 작성 및 위원회 제출에 대해서 현행 규정과 같지만 시한을 달리 규정했습니다. 니은의 이소영 의원님 안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요. 디귿의 박지혜 의원님 안은 공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항목에 대한 통합의견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개의 개정안, 즉 니은 항목과 디귿 항목, 이소영 의원님 안과 박지혜 의원님 안을 통합 반영하는 안을 일단은 만들어 봤고요. 다만 시한은 90일 이내로 작성했습니다.

기역 부분을 제외한 이유는 9쪽 우측에 보시면 역시 환경부에서 이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일단 제외하는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항목 9쪽의 왼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 통지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 제9조 제4항인데요. 관계기관이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개선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탄녹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러한 의무를 미이행 시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축계획 제출 또는 개선사항의 반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시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즉 감축계획입니다—의 위원회 심의 후 미흡 시에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4·5번 항목은 8쪽의 통합의견 보시면 모두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면 적용례 규정 추가가 필요해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보고서부터 적용한다’라고 일단은 통합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9쪽 우측의 환경부 의견은 잠시 후 청취하시고 고려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의 목차 2번 항목은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인데요 표를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본계획, 시도 기본계획이 각각 있는데요. 현행 규정은 이 계획들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국회·지방의회의 기본계획 시정·개선 권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가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우측에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의견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후 청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동그라미 2번 항목은 일단 반영해서 작성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 3번 23쪽입니다. 일단 목차 3번까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면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은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1년 이후로 일단 수정의견을 작성했는데요. 하위법령 마련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이 있어서 1년 이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자구가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일단은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뿐만 아니라 제10조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조사·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반영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은 수정의견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순배출량 기준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사항은 수용이고요.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 말까지 제출하는 문제하고 당해연도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 감축목표에 포함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연도별 이행현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또 통계가 확정되는 시간들을 고려할 때 6월 말까지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 체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진·개선 미반영 사유 통지 의무화라든지 의무 미이행 시 공표 문제, 미흡 시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들은 전문위원께서 수정 검토하신 내용들을 다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항목,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첫 번째, 아마 개정안의 취지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기본계획 수립·변경이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보고를 할 경우에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23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대로 시행일만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23페이지 3번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도 같이 말씀하신 건가

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것은 저희가 수용이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준비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6개월보다는 1년 정도 준비기간을 주시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에서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1번 주문 관련해서 감축 부족분을 차기연도 연도별 감축 목표에 반영하자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목표를 세웠는데 제대로 감축이 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 설정한 것을 감축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년 감축 목표를 달성 못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해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처리나 대책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서 마련되지 않고 그다음 해 계획은 그다음 해 계획으로 그냥 가게 돼서 그 이전에 수립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국가 배출량이 확정되는 시점이 올해가 25년이면 거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2년 정도가 걸려야, 2027년도에 가야 최종적으로 국가 배출량이 확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이행 점검 과정에,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보면 탄녹위원회장이 이행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최종 확정되는 배출량이 늦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잠정 배출량이라는 것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끄집어내서 이행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면 이것을 법에다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종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행 점검 과정에서 잠정 배출량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고 또 필요한 보완 대책이 있으면, 아까 다른 조항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완 대책도 내야 되고 내지 않을 때는 공표도 하고 이런 제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면 우리가 35년 목표를 얼마로 설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감축목표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해 감축목표가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35년까지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그게 반영돼서 계획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점을 좀 더 분명하게 명시화하자는 취지인데 그냥 이행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만으로 그렇게 해서는 좀 불명확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관련해서 통합안에 지금 제 안이 반영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조금 덜 분명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

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서왕진 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게?

○소위원장 박지혜 13페이지 서왕진 의원님 안 옆에, 이게 10t이 미달되었으면 10t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을 더 요구하시는 의미로 아마 의원님 안이 마련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량적인 부분을 직접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10t을 더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자는 제안이고 그 부분이 통합의견에 반영이 되어서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반영을 하면 어떨지……

○서왕진 위원 차이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소위원장 박지혜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의미거든요.

○서왕진 위원 수치만 안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서왕진 위원 너무 두루뭉술이 아닐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배출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정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미달성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을 내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한번 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5년 지나면, 지금 기본계획이 5년마다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끊어서 다음 2030년까지 우리가 잘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롱텀 계획을 세울 때 확정 배출량을 가지고 다시 종합 분석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다만 매년 반영하는 것은 배출량 자체가 특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정으로라도 해서 이렇게라도 반영을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

○서왕진 위원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그다음 해에 감축량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로서 바로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매년 이행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리고 미진한 것은 미진한 대로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야지 그다음 해에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어쨌든 잠정적이지만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화 한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부족한 부분을 명시화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그다음 해의 이행계획에 계획안을 반영하도록 한다, 숫자로 딱 열마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담았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방금 서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잠정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행 점검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잠정치를 기준으로라도 결과보고서가 중순 쯤에 나와서 지금 이 통합의견에 따르면 3개월 내에 다음 연도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이행 점검이 실제로 다음 해의 부족한 부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6월 말까지 잠정치를 기준으로라도 결과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지금 상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말까지 내기에는 정말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잠정치를 최대한 빨리 뽑으면, 저희가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한 7~8월 정도까지가 베스트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9월까지 내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면 90일 이내가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연말까지는 저희가 보완 계획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7~8월 달로 당기는 것도 엄청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6월 말까지로 이렇게는 어려운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9월까지여도 어느 정도 잠정 배출량이 빨리 나오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결과보고서를 낼 수도 있고요. 법에서 그 한도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걱정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같이 논의될 수 있을 정도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완할 게 많지가 않다면 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연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만약에 6월 말까지를 삭제하고 연간 이행점검 프로세스가 정착되도록 하는 게 사실 이 개정의 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되고 있지가 않으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90일 내에, 이 90일을 좀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6월을 삭제해야 한다면? 지금 이소영 의원님은 30일도 제안하셨거든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시면 두 달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희가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래도 하려면 저희가 또 내실 있게 어쨌든 보완 계획을 내야 되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시기를 앞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9월 정도로 이렇게 잡고 당길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당겨 보되 일단은 9월 정도로 하고 60일 이내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신 셈인데,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장님께서는 앞의 거를……

○**소위원장 박지혜** 앞의 거를 삭제한다면……

○**서왕진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지 60일 이내든, 언제든.

○소위원장 박지혜 9월 말까지……

○서왕진 위원 차관님이 현실적으로 아주 기술적 판단이 그러하시다고 한다면……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면 9월 말까지로 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60일로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 1항과 관련해서?

2항과 3항 포함하셔서 또 의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항은 사실 사전에,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을 국가나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이 발의한 의원님의 핵심적인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되지만 시정 또는 개선권 고는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방향만 보고하는 거라도 가능하다면 사전보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타 부처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에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의견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좀……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 입법례들도 좀 그런 게 있고요. 사실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가기본계획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기본 방향만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요.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위원님들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의견 없으시면 2항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항 같은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소희 위원님, 혹시……

○김소희 위원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소희 위원 준비하시는 데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이게 사실 지난번에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통과가 돼서 국가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요. 각 부처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같이 조정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넓게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으로 받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첫 번째 수정된 것이 정리가 명확하게 되셨나요, 첫 번째 거?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예, 동그라미 1번에 매년 6월 말까지를 9월 말까지로 그리고 9쪽에 나와 있는 결과보고서 공개한 날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 이 부분은 60일로 일단은 수정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항 설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차 4번·5번·6번, 3건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목차 4번, 기후대응기금 사업 평가 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목차 5번입니다. 29쪽입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노동자 등의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왼쪽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각 개정안 비교표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 위촉 시에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로 추천받거나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 청취 또는 의견 청취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정혜경 의원님 안은 이 다양한 사회계층 안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 문구는 빼시고 그냥 후보를 무조건 추천받도록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은 역시나 다양한 사회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하고 계시면서요 후보 추천 또는 의견 청취로 현행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 비율에 대해서는 정혜경 의원님 안이 중앙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사회계층 대표성 반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입장을 고려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통합의견으로는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일단 통합 반영하는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취지를 살리는 내용으로 일단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구성부터 적용하도록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목차 6번 사항인데요. 35쪽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서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즉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26페이지 네 번째 사항 기후대응기금 사업 평가 근거 마련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검토보고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29페이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대표성 반영 근거 마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태호 의원님 안으로 통합한다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35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수용이고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4번이요 기후대응기금 사업 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지난번 기후기금 심사할 때 평가 근거 마련해 주시면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때 기후기금 저희한테 보고 주신 것처럼 그런 보고 절차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회에 보고한다 이 내용을 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약간 어차피 예산에서 다 하는데 굳이 기후특위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던데 여기에 오셔 가지고 기후기금 관련해 가지고 보고하셨을 때 여기 특위에 계셨던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잖아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평가 항목을 만드는 것 외에도 다시 한번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시고 그리고 예산심의안에 계획안을 반영하는 그 절차는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반드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어떤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위원님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조의2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말씀 그대로 살리시자는 말씀이시지요?

○김소희 위원 그러니까 평가 근거 마련하고 또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예산심의에 활용하는 절차,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살려 주셨으면……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기재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수용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사실 수정의견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여 가지고 의미가 너무 달라지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면 4항은 원안대로 합의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항은 지금 위원님들 의견……

○서왕진 위원 이견이 없는 거지요, 5항은?

○소위원장 박지혜 5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서왕진 위원 정부 수용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통합의견 정부 수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항입니다. 35페이지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김소희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건 원안에 동의하신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항, 8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내용이라서 목차 7번과 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7번 항목,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성곤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 규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지방위원회에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이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 지방기후위원회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명칭도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이렇게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보시면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놨는데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일부 포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및 기능 강화를 하겠다라는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계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을 통합 반영해서 먼저 환경부장관 명칭 부분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미반영하고요. 다만 국가위기대응위원회 명칭 그다음에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 명칭 변경은 일단은 수정의견에 반영해서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하단에 보시면 기존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서 양 위원회의 법적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한 경과조치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작성했습니다. 기존의 위원회가 한 심의 의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새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경과 규정이 되겠습니다.

38쪽도 마찬가지로 지방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경과규정 니은 항목 필요하다고 봤고요.

38쪽의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타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필요합니다. 위원회에 인용 조문을 두고 있는 타 법률들을 다 나열해서 조문 명칭도 변경하도록 다듬었고요.

다음, 55쪽입니다.

목차 8번 항목,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속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은 소속을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부, 위성곤 의원님 안은 환경부에서 국가기후위원회로 이렇게 각각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37페이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명칭 변경은 그 수정의견에 따르고요 경과조치도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여덟 번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속 변경도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자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정부조직법이 통과됐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행안위 소위에서 오늘 법안.....

○**임이자 위원**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지.

○**서왕진 위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타 법에 돼 있는 명칭이나 이런 것은 자동 반영이 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아마도.....

○**서왕진 위원** 그러니까 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굳이 기후환경에너지부니 뭐니 명칭을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7항·8항은 정부조직법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아마 명칭 변경은 그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변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 위원회 명칭?

○**소위원장 박지혜** 예, 7항의 그것만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를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는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이것 굳이 뭘 바꿔요? 명칭이 잘못돼 가지고 일 못한다는 일이 있나?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지 굳이 국가기후위원회라고 명칭을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한 번 했던 게, 익숙한 게 좋은 거지.

○**김정호 위원** 안 쓸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통일시켜야지. 통일시키는 게.....

○**임이자 위원** 아니, 익숙한 게 좋은 거고 이미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위원회가 나온 거지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뭐 있어? 원래 일 못하는 사람들이 연장 탓을 하는 거예요.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혼선을 예방하고.....

○**임이자 위원** 위원회 이름 잘못됐다고 일 못한다는 얘기 나는 처음 들어 보네.

○김정호 위원 통일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름을 이렇게 굳이 바꿀 이유가 뭔데요?

○김정호 위원 안 바꿀 이유는 또 뭐니까?

○임이자 위원 안 바꿀 이유는 지금 이 이름에 많이 익숙해 있고 국민들도 여기 위원회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바꾸지 말자는 거지 국가기후위원회로 바꿔 가지고 더 나아지는 것, 다른 것 뭐 있어요? 다른 것 뭐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이름 바꾸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부조직을 바꾸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면서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때 전체 패키지가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꾼다는 게 정부 방침이 전체적으로 섰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나는 정부조직법을 아직 못 봤어요, 주지를 않아 가지고.

○김소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안 쓰실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안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위원회 이름만……

○김소희 위원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위원회를 문재인 정부 때도 썼고 윤석열 정부 때도 썼고 저는 이것까지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염태영 위원 지금 우리 기후위기대응특위이지요,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것이 정부 정책은 탄소중립이 기본이 되고 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도 탄소중립위원회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기후위기대응특위같이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취지고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추세와 이후에 해야 될 역할을 보면 보다 맞겠다 싶어서 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이런 것 정도는 맞춰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통과되면 자동으로 이것 바뀐다면서 뭘 굳이 사석처럼 올려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 부분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서 여기……

○임이자 위원 자동으로 바뀐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소위원장 박지혜 아니, 부처 명칭은 자동으로 바뀌는데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명칭 변경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시고 우리 기후특위 활동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탄소중립 당연히 할 건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축과 적응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일은 아니니까 함께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시지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되고 나서 한번 봅시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물론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것이겠지만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통과되고 난 뒤에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절차를 좀 따릅시다.

○김소희 위원 안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신가 싶어 가지고.

○임이자 위원 뭘 이렇게 급해요?

○염태영 위원 오늘 특위는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심의 의결까지 간다면 그런 얘기도 맞는 거고 또 절차적인 논의라면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도 있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심의 의결을 해서 사실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출범시키자는 의미로 저희가 오늘까지 심의를 진행하려고 한 것인데요.

○임이자 위원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보류하세요.

○김정호 위원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언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행안위는 통과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행안위 소위는 통과한 것 같습니다.

○염태영 위원 금주 중에 아마 법안이 법사위도 통과하고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으로 있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염태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고 그 외에는 오늘 의결하는 절차가 전체적으로 일정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소위원장 박지혜 의결해서 같이 출범시키려고 하는 생각인데……

○염태영 위원 이런 정도는 양해할 수 있는 거니까 양당 간사님이 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사실은 이렇게 억지……

○김소희 위원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이름을 바꿔서 하시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조직법 통과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돌려 돌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곧 통과될 거라고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김정호 위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다 그렇게……

○김소희 위원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김정호 위원 이후에 논의가 아니라 절차를 딱 중시하시니까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그에 따른다 이런 정도로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따를 생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소희 위원 그런데 이것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굳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라는 의견 제시도 좀 많았어 가지고……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반문드린 게 안 바꿀 필요는 또 뭐가 있나 이렇게……

○김소희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오랫동안 썼던 브랜드 이름이 있으니까……

○김정호 위원 오랫동안 쓴 게 아닙니다. 3년 썼습니다. 녹색성장이 들어간 것은……

○김소희 위원 녹색성장이 들어간 것은 3년이고요 탄소중립위원회가 된 것은 오래됐지요.

○김정호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였잖아요. 그 전에 탄소중립위원회였고 굳이 성장을 붙여서 녹색성장위원회, 성장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김소희 위원 그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김정호 위원 반대로 생각하시면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렇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마당에 그에 조응하는 이른바 탄녹위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김소희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류하셨다가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이번에 보류하게 되면 저희가 법을 내년에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사실 이번에 통과시키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부칙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김소희 위원 부칙을 정한 것은 통과를 가정하고 부칙을 정한 거니까 저희가 이것 논의를 계속하지 말고 다시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상황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안 계신다고 갑자기 제가 바꾸면 큰일 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해가 안 되네요.

○서왕진 위원 이것은 양당 간사님이 조금 더 추가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보류하시고 다음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면 어떠세요?

○김소희 위원 다른 것 먼저 논의하시지요.

○김정호 위원 그럼시다.

○소위원장 박지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7항은 보류하고요.

9항부터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차 9번·10번·11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목차 9번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불화질소를 설명드리면 질소와 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무색·무취의 가스 형태로 존재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플라즈마 식각 및 세정 공정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지수는 탄소의 1만 6100배에 해당하여 적은 양으로도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국의 체계에 맞춰서 하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탄소 중립기본법상의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불화질소를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온실가스로 관리는 하되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부 의견도 있으니 이것을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목차 10번 항목, 동법 목적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 및 탄소예산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의 목적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탄소예산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탄소예산 산출 그리고 결과보고서의 작성·공개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각 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탄소예산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안은 국가 전체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허용 가능한 총량, 서왕진 의원님 안은

특정 연도 이후 우리나라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잔여 총량, 이소영·위성곤 의원님 안은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 박지혜 의원님 안은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산출 이렇게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계 부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개정안은 기본원칙에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명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기여와 세대 간 형평성 반영 그리고 과학적 근거와 탄소예산에 기반해 설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 다 정부부처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목차 11번 항목,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준 연도 배출량과 목표 연도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비전에 따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각각 감축하도록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개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정혜경 의원님 안은 30년 50%, 35년 65%, 40년 75%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의원님 안은 30년 40%, 35년 65%, 40년 85%, 45년 95%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은 30년 35%, 35년 61%, 40년 80%, 45년 90%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은 30년 35%, 35년 60%, 40년 80%, 45년 95%입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은 30년 35%, 35년 65%, 40년 85%, 45년 95%입니다.

이어서 다음 80쪽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지혜 의원님 안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그 목표가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님 안은 2050년까지의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의 중장기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재검토할 시—5년 주기입니다—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지혜 의원님 안은 탄소예산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설정 또는 변경 시에 아동, 청년 여성 등에 미치는 영향, 탄소예산,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 돌아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규정하면 기준 연도 배출량이 변경되어서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4억 3660만t의 실제 감축비율은 36.4%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 별로 법률상 감축목표 규정 35%에 부합할 수도 있고 또는 미부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행령 개정 또는 감축목표 수정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80쪽에 관계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청취하신 후에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58페이지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 추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의규정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아직 국제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배출권거래제나 이런 데 담아서 관리하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정의규정으로 포함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만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열 번째 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동법 목적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탄소예산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탄소예산을 각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확정되어 앓지 않은 탄소예산 개념에 기초해서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본원칙에 미래세대 환경권을 명시한다든지 전 지구적 기여 및 세대 간 형평성 반영 등 일반적인 원칙은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열한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준 연도 배출량하고 목표 연도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탄소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열 번째 항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여기 전부 의원님별로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 수준을,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2035 NDC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이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다가 특정 수치를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특정 수치를 명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또 국제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등을 다 수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9항부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했던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배출권거래제뿐만 아니라 현재 목표관리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상대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기업들이 대기업·중견기업인데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기업들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관리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도 같이 배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9항부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온실가스 정의규정 관련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주신 것이거든요. 부칙으로, 지금 온실가스 정의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배출권거래제에서 규율하는 것 그리고 방금 추가적으로 의견 내신 것 같은데요. 목표관리제도 지금 빼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 의견은 어떠세요?

○ 환경부 차관 금한승 아까 저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랬는데 목표관리제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소위원장 박지혜 예.

○ 서왕진 위원 그러면 EU 배출권거래제에는 지금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 환경부 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 소위원장 박지혜 혹시 김성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 김성희 위원 일단 대부분의 기후 관련되어서 신경 쓰고 있는 나라들에서 다 삼불화질소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산자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적절하게 중재안을 내주셨다고 생각해서요 환경부 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희 위원 환경부 안하고 지금 산업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아닌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예, 같이……

○ 김성희 위원 예, 일치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쓰여 있는 조항은, 경과조치(안)은 환경부가 적으셨으니까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 환경부 차관 금한승 예, 아까 말씀하신 배출권거래제하고 목표관리제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지혜 이것 문구를 수정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환경부 차관 금한승 예.

○ 소위원장 박지혜 산업부 의견에 보면, 사실 삼불화질소도 원래 대체물질로 개발된 물질인 것이지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그렇지만 여전히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저감조치를 강하게 시행해야 된다 지금 그런 차원인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라는 원칙에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불화질소를 정의조항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성희 위원**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부 공정에서는 삼불화질소 대신 불소가스로 대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서로 협의해서 기업도 대안을 찾아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과한 생각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대체로 기술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R&D를 하고 있는데 상용화되기까지 앞으로 한 35년 이후에나 갈 수 있다는 최근에 그런 중간 결과보고서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대체가스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특히 반도체 부분은 경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경쟁국하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두르게 이것을 도입했을 때, 규제가 들어가게 됐을 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급격하게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우위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민하시고 감안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게 앞서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다른 나라 배출권거래제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다는 아니고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일본은 저희하고 배출권거래제 방식이 다르고요. 거기는 자발적 배출권 거래 방식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거기에는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말씀은 맞는데요, 일본은 저희하고 같이 캡을 씌워 놓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발적인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콘셉트가 조금 다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김소희 위원** 여기 의견 있으십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정호 위원**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정작 산업계가 감축 부담 때문에 대체물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이것을 개발될 때까지, 뭔가 대체물질이 있을 때까지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게 1만 6000배 이상 온실가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선 반도체 선진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루어 놓는 게 지나치게 업계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삼성 반도체나 SK하이닉스나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

런 만큼 돈도 많이 벌어서 이 정도 부담을, 어쨌든 환경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그런 특별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하는 부분을 경과조치로서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애시당초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경과규정에 대해서 완전히 빼 주는 게 아니라……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좀 시한을 둔다든지 다른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김정호 위원** 국제 경쟁력은 특별히 TSMC나 이런 데 말고 식각이나 세정하는 데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이것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줄 수는 있겠지만 애시당초 이것은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에 또는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리가 없는 그런 사유로 이것을 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정의규정에 들어온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과조치는 지금 아직 대체물질도 없고, 저희가 이것을 통계로 관리는 하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는 게 ‘인정하는데 영원히 빼 주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빼 주자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산업부차관입니다.

NF_3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착·세정·식각 공정에 쓰이는 물질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 가스 사용 중에 아마 70%가 그 비용에 차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공정에서는 핵심 공정, 핵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배출권거래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사실 70% 이상의 비용 상승 요인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이 저희 턱밑까지 상당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저희보다 경쟁력을 더 갖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기준 초기의 경쟁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면 레벨 더 플레이팅 필드(level the playing field)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들한테 일단 정의 조항에 들여놓음으로써 관리할 수 있고 통계를 작성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줌으로써 이런 의미는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추가적으로 조항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혹시 아까……

○김소희 위원 글로벌 기준에 저희가 현저히 못 미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차원은 저는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통계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통계에 넣는다, 저는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대체물질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고 별로 없고 대체물질도 만약에 다 수입이고 그러다 보면 대체물질로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또 해외 것에 의존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상승되고……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ETS도 통계에 넣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예외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NDC가 있지만 그게 배출권거래제랑 연동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배출권거래제도 일본은 딱히 없고 그래서 산업에 미치는 부담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래는 정의 규정에도 넣지 말자는 게 산업계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정의에 넣어서 일단 국가가 이 통계를 관리하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반도체 기업들한테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시작으로 점차 통계를 작성하고 이것을 어떻게 줄여 갈지를, 그 단계를 좀 더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당장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은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 1만 6000배 정도 온실가스 효과가 있다는 것은 통계가 나와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전후방 연관 효과라든가 앞으로 첨단 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감안했을 때 조금 이 부분에……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배출권거래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적용 제외를 시켜 달라,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현황이 파악됩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자료 6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165만t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대체물질보다도 사실 이것은 열분해 처리해 가지고 완전히 분해시켜서 쉽게 말해서 완전연소시키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024년에 반도체 전체 F-gas 배출량 보니까 1년에 24% 줄었더라고요. 이것을 관리하면 그 기업들이 분해기술에 투자를 하고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또 새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장이 창출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탄소중립경제의 새로운 길을 여는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을 너무 겁을 내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열분해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정 프로세스를 일부 개선해 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저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D를 통해 가지고 대체물질 개발에 대해서 아직 R&D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삼불화질소에 대한 감축량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업계의 감축 기술과 관련한 것을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의 잠정 배출량이 F-gas가 1년에 25%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이 아예 없어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NF₃ 가 F-gas 중에서도 가장 감축이 어렵다고는 저도 들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F-gas 전체로 둘이 가지고 벤치마크에 따라서 좀 빽세게 할당을 하면 기업들이 F-gas 관리를 더 전제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그러면 F-gas 저감 기술에 투자하는 게 기업에게 얼마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수치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면 대만도 NF₃ 포함해서 탄소세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61페이지에. 비용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경쟁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서 계속 심사를 해 보면 어떨까요?

○김정호 위원 하여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독보적으로 어쨌든 메모리나 시스템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온난화지수에서 1만 6000배나 되는 사회적 부담을 이익은 사유화로 그 기업들이 독점하면서 비용 부담은 전체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 전체에 부담을, 뭐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하면 1만 6000배를 전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당장 대체물질은 아니더라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R&D나 실용화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마냥 글로벌 경쟁력, 산업계 입장만 대변할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현황, 열분해 방식이든 감축 방안 이런 것들의 현황이 좀 파악되고 그런 것들을 이후에 줄이거나 이 발생을 감축하는 그런 등등의 해법을 찾아내는 데에 이 배출권거래제, 단지 정의만 넣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 연장선에서 아까 전에 산업부 차관님께서 R&D를 아직 한 번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R&D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실증된 결과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조지연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현재 지금 R&D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35년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기업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3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예.

○조지연 위원 우리 국가가 투자를 일부 했습니까, 그 R&D 관련해 가지고?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할 텐데 이게 마냥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게 아니라 R&D가 결국 잘 이루어져서 기술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수반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R&D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35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낮은 온실가스 감축,

GWP의 대체물질 개발을 위해서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R&D 과제를 2023년부터 시행해서 30년까지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자연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다음에 그 실증 과정을 거치면 35년 정도까지는 대체 가스가 완전히 상용, 개발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국가가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대체물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지연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F-gas가 전체적으로 양이 줄었다는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통계라든가 R&D 현황, 결과 그다음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F-gas 전체가 줄어드는 부분하고 삼불화가스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느 가스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지금 격년투명성보고서에 NF₃ 넣은 게 올 2월에 위원회에 처음 보고하신 거고 그전에는 통계가 따로 안 잡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국가 단위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런데 이번에 정의 조항에 들어가서 관리가 들어가면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기반은 마련됐다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됐고 25년에 처음 집계해서 유엔에 보고한 게 다라서 늘었다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는 게 환경부차관님의 입장이십니까? 맞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리스트에라도 집어넣어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라도 파악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규제까지는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산자부차관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김성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논의를 더 하기는 하겠지만 리스트에 올려 놓는 것은 꼭 해서 증감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시는 말씀대로라면 다음 달이 돼도 증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지요? 더 리서치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2021년, 20년, 23년 통계가 나오지는 않는 거지요? 제 궁금증은…… 뒤에 실무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

○환경부차관 금한승 기후변화국장이……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보고한 BTR에 연도별 배출량을 22년까지는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몇 년부터 22년?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90년부터 22년까지 과거 것을……

○ 김성희 위원 그러면 통계는 있는 거네요?

○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예, 통계는 있습니다.

○ 김성희 위원 그러면 통계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기 지금 60쪽에, 반·디 업계 NF₃ 구입량이 22년 현재 12만 7000t이거든요. 이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만 6000배로 곱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20억t 정도 됩니다, 연간 배출량이. 20억t 정도 된다면 전체 우리 목표를…… 엄청나게 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 몇 군데 안 되는 공장에서 NF₃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22년도 20억t, 12만t 곱하기 1만 6000배잖아요. 곱하면 끝자리까지 하면 20억t 정도 됩니다.

○ 환경부차관 금한승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것을 계산한 게 165만t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 그대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감 기술을 적용해서 그렇게 배출되는 거지요?

○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환산계수를……

○ 김정호 위원 이것은 구입량 기준이고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는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텐데 만일에 이 구입량을 다 썼다고 전제해서 가정한다면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19억 2000만t, 20억t 정도 되는데……

○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니, 위원님, 소비하고요 그것을 대기 중으로 다 방출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공정 과정에서 저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감 효율을……

○ 김정호 위원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고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보고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은 저희가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항,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서왕진 위원 10항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너무 소극적인 입장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개선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현재가 명료하게 원칙을 몇 가지 제기했지 않습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31년부터 49년까지 어느 정도는 정량적 수준이 나와야 된다는 점, 이것은 대전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량적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가 기여해야 될 몫에 부합해야 한다’,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국제적으로는 IPCC에서 탄소예산을 통해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잔여 총량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했고 다만 그것을 우리나라에 얼마나 배분할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서왕진 위원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일반 국제 기준이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진전되고 과학적 근거 또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지 여전히 그런 근거 없이 우리가 잠정 목표치를 그냥 근거 없이 정해 놓고 각 분야별로 얼마나 가능하냐 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취합한 거를 국제 목표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탄소예산 기준에 근거해서 훨씬 더 진전된 우리의 계획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한 수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아예 탄소예산 기준이나 근거 자체도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탄소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PCC에서 나온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는 탄소예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30년 온실가스 목표가 2018년 실제 배출량 대비 몇 % 감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를 감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협의 그다음에 우리 목표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2018년 실제 배출량입니다, 국가 배출량.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탄소예산으로 하시면 이 탄소예산을 대한민국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이 탄소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걸 GDP로 할 건지 인구수로 할 건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IPCC에서 나온 탄소예산을 가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지금 탄소예산의 개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제사회가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빨리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건 맞고요.

다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는 정확한…… 지금 저희가 유엔에 제출하고 있는, 2018년도 국가 배출량 대비 몇 %를 줄이겠다, 이걸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목표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2018년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는 있지요? 2018년 기준으로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하겠다. 시작과 끝은 있지요. 시작과 끝은 있는데 그 중간 경로 과정 과정에서 얼마씩을 줄여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임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뒤로 잔뜩 미뤄 놓는 그런 식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시작과 끝은 있지만 그 중간 단계 단계의 목표치를 정하는 방식이 그 시점에서의 탄소예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잔여 총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매우 임의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2018년하고 2050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은 너무 임의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뒤쪽으로 잔뜩 다 미뤄 놓고 그 정부 단계 단계에서는 굉장히 임의적인 작은 수치만 내놨단 말이지요. 그것도 뭐 2018년 기준인 건 맞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과학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 일의 진전을 가지려면 탄소예산 기준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그 기준에만 맞춰서 우리 현실을 다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수준으로 우리는 밟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진전된 점은 아니냐라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단에는 좀 느슨하게 하고 뒤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5 NDC 하면서도 그렇게 안 되게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2050년까지 가는데 지금 30년까지 목표치만 있고 35, 40, 45가 없다, 이 중간에 경로가 없다는 측면이시고요. 탄소예산을 가지고, 그 차원의 취지하고 그거를 저희가 중간에 감축경로 목표치를 찍는 거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탄소예산을 갖고 그 기준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김소희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 부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희 위원 저도 탄소예산,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여러 차례 검토를 좀 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1차 공청회 때도 진짜 많은 전문가분들이 탄소예산을 국가 단위로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점을, 전혀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평가 방법론이 아니라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시해 주셨고요.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서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수치 계산은 이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IPCC가 탄소예산을 제기했던 까닭은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줄여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산된 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탄소예산을 각 국가별로 지금, 한 번도 탄소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도 없고 어떻게 계산하는 식도 없는데 이걸 덜컥 우리 법에다가 넣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과학적 근거에 조금 부합하지 않아서 약간의 우려를 표하고요. 헌법불합치에 대한 그런 결정에 맞춰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이걸 관리를 잘하자, 이거를 목표관리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방법론도 없고 평가 방법도 없는 이 내용을 우리 입법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우선.

○서왕진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이야기했을 때 2031년부터 49년까지 목표가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적인 거 맞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담자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수치를 어떻게 담아낼 거냐 관련해서 탄소예산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IPCC의 결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정할 일은 아닙니다.

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제가 IPCC를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서왕진 위원 김소희 위원님께서 또 그런 언급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IPCC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국제 종합적인, 온실가스든 아니면 CO₂ 기준으로 하든 간에 30년, 35년, 40년, 50년의 목표치를 다 설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각 나라가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 기준이 현재 합의된 게 없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각 나라별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원리나 자기의 기준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정돼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역할 분담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로 우리가 제대로 올라서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우리도 그 기준에서 준비 작업들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방식으로 각 국가에 배정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선형 기준이든 뭐든 그런 것과 다른 또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국제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과 연구 작업과 과학적 기준들을 세워 나가는 것들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우리의 감축 기준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냐, 국제적인 논의가 있을 때 제대로 일관성 있게 저는 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참고로 탄소예산 관련해 갖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예산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탄소예산을 과학적으로 정립해서 그를 토대로 해서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201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탄소예산을 법으로, 당시 영국에서도 탄소중립법의 1990년 대비 감축목표는 법에 명시적 반영을 했습니다만 탄소예산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아직까지 논의가 법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 남아 있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 해결해야 될 부분 감축량에서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부분도 기준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시적으로 법으로 반영하기에 시기상조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영국에서도 이것은 그런 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준비는 하되 그런 부분에서 법을 반영하는 건 조금 시기를 보면서 국제적인 기준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보고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위원님들……

저는 탄소예산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65페이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원용해 주셨는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의미는 탄소예산이 불확실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밑줄 그어 놓으셨잖아요, 사법기관에서 원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국내 기관의 공개적인 산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왜 들어갔냐면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때 독일 정부에서 수립한 전문가 위원회가 있었는데 SRU라고 약자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풀네임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독일의 탄소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알려 줬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는 그런 신뢰할 만한 국내 기관의 공개적인 산출 절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라고요. 이 법을 발의한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이—저도 포함되지만—IPCC의 방법론을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말한 것처럼 IPCC에서 확립된 글로벌 탄소예산 산출 방법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신뢰할 만한 과학자들이 한 연구는 없으니까 그러한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준의 프로세스 그리고 공인된 전문가들이 공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탄소예산이라는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의혹성도 평가하고 앞으로 감축목표 설정에 활용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합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는 탄소예산이라는 개념도 우리 법에 도입을 하고 관련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절차도 법으로 규율을 하자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부 기관에서 많이 반대하셔 가지고 조금 더 계속 심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헤아리셔서 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답변드릴 때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IPCC라든지 탄소예산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를 현재 법에 반영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탄소예산의 개념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바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선행이 돼야지 이런 법적인 정의, 법으로 갖고 오는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무슨 비과학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오늘 논의 과정이 비과학적이라는 취지의 말씀들 많이 하셨고 사실 사회적인 그런……

○환경부차관 금한승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소위원장 박지혜 차관님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 워딩 중에. 그리고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기후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최근 몇 년간 빠짐없이 등장했던 것이 탄소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논의가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고요.

그에 반해 지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IPCC를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지금 기후 정책 논의에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다고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셨는데 탄소예산을 그러면 정부에서는 조금 더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재고라 하시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박지혜 탄소예산의 개념을 법에 넣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건 안 된다라든지 뭔가 모종의 타협안을……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계속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김정호 위원 11항 넘어가기 전에 10항에서 동법 목적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견이 없음 이것은 수용하고 탄소예산 정의규정 신설이나 작성·공개 등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둘다 미룰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은 긍정적으로……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아까 환경권 보장은 제가 수용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거기까지 동의되었다는 것은 속기록에 남겨 놓고요, 저희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서왕진 위원 환경부 의견을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순배출량으로 하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으시다고 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감축량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구체적으로 감축경로의 수치를 명시하는 것은 불수용 입장입니다.

○서왕진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사실 지금 2035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기 감축경로를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론화 과정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수치를 명시해 버리면 사실 공론화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박지혜 11항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조지연 위원 지금 공청회 진행 중인데 이걸 명문화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왕진 위원 어쨌든 그 논의하고 함께 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서왕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다음, 12항부터 수석전문위원 심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104쪽부터 목차 12번 항목입니다.

12·13·14번 목차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국가기후위원회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성격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국가 탄소중립정책 총괄·조정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심의 의결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현행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입니다마는 위성곤 의원님 안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기능도 다소 상이하고요.

구성 인원도 현행은 위원장 2인 포함 50~100인 사이인데 이것을 위원장 1인 포함 9인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원장 임명도 대통령이 국무총리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이 부분은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행안부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8쪽 목차 13번 항목 되겠습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분석·예측·검증 등을 위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님 안은 대통령 소속 독립자문기구, 위성곤 의원님 안은 국가기후위원회 산하 독립기구, 차지호 의원님 안은 대통령 소속 독립적 합의제 자문기구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앞서 논의하신 탄소예산 산출 보고 등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검토의견으로는 탄소예산 산출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기존 탄중위의 각 분과위원회와 설립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유사·중복성이 없도록 이 부분은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위원 임기 등과 관련해서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지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19쪽, 환경부와 탄중위·행안부 등의 의견도 참조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목차 14번 항목입니다.

기후시민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 수렴 그리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원회 소속의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1인 포함 100명 이상 2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고요.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의견 등을 국가기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취지로 궁정적으로 봤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환경부와 탄중위 의견을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12·13·14번 항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조직 개편안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고요. 뒤에 기후과학위원회라든지 기후시민회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국가기후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하고 거기에 탄녹위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신설하거나 이런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인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조지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나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

○**조지연 위원**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논의하다 보류가 됐는데 일단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안에서…… 현재 위원회상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고 또 그 조직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다시 재배치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조지연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어쨌든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리고 발표를 하신……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희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12·13항 같은 경우에도 탄녹위가 변경되는 위원회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방금 정부 의견도 그런 것 같아서요. 저희가 12·13·14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서왕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냥.

여기 안으로 나와 있는 기후과학위원회하고 현재 온실가스정보센터인가요, 역할이나 기능 부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 설명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기후과학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이 기후과학위원회로 통합이 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개정안을 내 주신 위원님들의 취지는 아마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사실 자문기구여서, 온실가스정보센터는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족이 되면 소속기관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약간 업무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기후과학위원회는 전반적인 과학적 근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권고 또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제공한다든지 약간 영국식 기후변화위원회를 따르고 있고 저희 온실가스정보센터는 공무원 조직으로 국가 배출량 통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입니다.

○서왕진 위원 예.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15항부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차 15·16·17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목차 15번 항목인데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40년까지 석탄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시설을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요. 폐지 계획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긍정적 취지로 봤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안 등이 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42쪽 목차 16번 항목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목차 17번 항목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건축물 사용 에너지 및 배출 온실가스 목표의 평가·공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건축물 사용 에너지 및 배출 온실가스 목표의 평가 및 공개와 관련하여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평가·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관계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의견인데요. 이 부분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15·16·17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16번 항목 의견에 대해서,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적응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보고도 수용하고 개정안 수용 입장이고요.

앞에 140페이지 15번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산업부차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

○소위원장 박지혜 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40년까지 4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LNG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21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석탄발전 조기 폐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정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아직 확정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석탄발전 폐지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탄중위의, 석탄화력발전 폐지 및 폐지지역에 관한 법률 한 13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 심사 경과를 봄에서 동법 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어서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장님, 그리고 144페이지 17번 항목 건축물 사용 에너지 및 그 부분은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의견을 조금 들어 주시면……

○소위원장 박지혜 예.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홍성준입니다.

17번 안건에 대해서 저희 부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생산시설이나 숙박시설, 판매시설, 병원 등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사실상 매출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서 입주기업의 매출과 경영 상황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정부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대상은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적용하거나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인데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고 녹색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계에서는 입주할 때 오히려 녹색건축물을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업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환경부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다 말씀……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항의 경우에 산업부에서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한 다음에 법률을 제·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 협의는 혹시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현재 지금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사실 사용 연수가 있고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보상, 그러니까 수용과 관련된 보상을 법률로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석탄발전 폐지법안에 이런 내용들 보상 기준과 원칙이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로자라든지 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2개의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가 한노총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내년도 초반까지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민노총하고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운영이 돼서, 가동이 돼서 여기에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보장,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석탄 발전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들을 전부터 거쳐서 석탄발전 폐지 방식, 보상 지원 기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 대화에서 법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하고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탄발전 폐지에 관한 법률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 상황 경과를 봄으로써 동 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사실 이 대화를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했던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2040년은 저희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조속히 이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7항 넘어가도 되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정호 위원** 이 개정안의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평가·공개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경영정보 공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의견 수렴을 더 하고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제일, 산업계 못지않게 저항도 있고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현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홍성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보강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는 17항 관련해서 이 법의 입법취지가 그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라는 말이지요, 기존의 법률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흥성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한 결과를 평가해서 공개하라는 것은 개별적인 건물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신 건가요? 지금 국토부에서 의견 주신 것은 개별 건물에 대해서 다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부담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흥성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것은 현재 개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로드맵을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책 내용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개정안에 공개가 된 것은 그런 건축물의 개별적인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그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실하고 소통해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건물 부문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신 것 같다고 저는 법문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다음 심사할 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흥성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저희가 15항은 지금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16항의 경우에는 지금 동의해 주신 것 같고, 17항의 경우에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8항 수석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18·19·20번 목차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목차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와 정책 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박스에 설립목적 등 규정을 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으로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제도연구·기획, 실태조사와 통계수집·분석, 지역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전환·폐지지역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과 감독권한, 준용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까지 두고 있고요. 설립준비와 설립절차 등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현행법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또 동법에 따라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셔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56쪽 목차 19번 항목입니다.

156쪽에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제목과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부칙에 공포 후 6개월로 두면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계정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중간에 참고 표시된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해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후대응보증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 받고 있었는데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란에 보시면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25년 3월 1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서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쪽 목차 20번 항목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대응과 피해보상 규정 신설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 부처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번 항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147페이지 18번째 항목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기타 이미 법에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나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불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56페이지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은 서왕진 의원님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농축수산물 가격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좀 이견이 있어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 의견을 대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기재부 내 관련 부서하고 농림부 등에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내용과 함께 지금 발의돼 있는 게 김소희 의원님께서 농안법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안이 발의하셔서 농해수위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내용 검토 의견은 160페이지에 같이 부기가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농안법하고 축산법에 근거해 가지고 수급 안정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도 이와 같이 선제적인 어떤 수급 관리 조치와 함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농안법·축산법 등 동 체계 규정에 따라서 농축산물을 통합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최근에 농안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8월 26일 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점을 반영해서 조절 대책 및 지원 대책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농림부나 저희 기재부 내 관련 부서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원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안기금이나 축산기금의 재원 상태가 아주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부동의하신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이게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하고 그 법의 처리를 전제한 범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19항은 지금 동의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잠깐 19항.....

○**소위원장 박지혜** 예.

○**환경부차관 금한승** 검토보고한 대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 부분을 혹시 설명드리셨나요, 서왕진 위원님께?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희가 그러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위원장님, 확인해 보니까요 오전에 저희 담당자가 설명을 드렸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20항은 제가 발의한 건데 기재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환경부는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재부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약간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아니,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행에도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체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소희 위원** 그래서 근거 차원 제시로 저는 범부처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이나 수급 불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쟁겨봐 주셨으면.....

이걸 당장 제가 지금, 제가 이거를 하고 지금 추가로 말씀 주셨던 게 농수산물 유통법하고 그 안에 다, 법안을 별도로 한 것도 큰 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대한 근거 제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은 범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기재부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문제랑 좀 트러블이 있다 하면 제가 추가로 발의한 그런 부분에서 그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

는데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기후 적응 부분에 대해서 기후특위에서도 계속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후기금 측면에서도 적응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살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면 제가 지금 논의를 좀 하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이게 기존에 농해수위 관련된 법안에만 담겨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 줘야 된다. 그래서 환경부도 지금 기후보험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라……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여기 구체적으로 문안을 한번 보시면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피해보상 방안’, 특히 피해보상 방안까지도 하려면 피해보상 방안이라는 게 사실은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그러면 문구만 살짝 수정하면 될까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좀 다루……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그 문안 수정에 대해서는 잠깐 좀 시간을 주시면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피해보상 방안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 이런 부분.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일단 저희가 직접 의견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한번 대안 문구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농림부하고 협의가 필요하시다는 뜻인 거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농림부나 저희 기재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문구 오면 문구 받고 통과든 아니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다음으로 21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1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21번 항목부터 24번 항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먼저 보시면 현행 규정은 명칭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안은 기후인지 예산제도, 박지혜 의원님 안은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한정애 의원님

안은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님 안은 같지만 박지혜 의원님 안은 예산·기금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 기후변화에의 적응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정애 의원님 안은 이 부분을 예산·기금 및 조세감면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를 중장기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취지로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관련 부처 의견 들으시고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의 목차 22번 항목 되겠습니다.

목차 22번 항목은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의견을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72쪽, 목차 23번 항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궁정적 취지로 보았습니다마는 부처 의견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의 목차 24번 항목, 감축목표 등 이행 실적의 업무평가 반영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실적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등 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해당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民間 부문으로의 확산을 견인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다만 현재 탄녹위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 상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반영된 내용도 있다는 측면 고려하셔서 논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의견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162페이지 스물한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서 대상 확대하는 거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정안 불수용 입장이고요.

169페이지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도 사실 지금 기후대응기금 내에서 이미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이

기후대응기금 자체가 수입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지역기금에 대한 재정 근거 신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개정안 불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도 이미 관련 조문에, 48조하고 70조 제3호에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불수용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의 스물네 번째 감축목표 등 이행 실적의 업무평가 반영에 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기획재정부나 교육부에서 기준에 하고 있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평가들에 기반영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반영을 하더라도 수정 수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21항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23항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3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하는 건데 산업부도 기본적으로 불수용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불수용의 이유가 환경부와 좀 다릅니다.

현재 그 근거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70조 제3호와 48조에 있는데 48조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들 위주로 돼 있고요. 70조 제3호는 지원대상을 지역 노동자로 매우 한정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침체, 실업 문제 이런 것에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불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항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우선 23항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석탄발전 폐지 관련해서는 산자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있어서 관련된 논의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항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위원장님, 21항에 관련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예산실의 기후환경예산과장이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예산과장입니다.

이번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도 도입 당시에 대상 사업의 명확화를 위해서 제도 명칭과 대상을 감축으로 이렇게 한정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가 3년째 운영 중인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그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당분간은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실질화를 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평가하는 나라가 프랑스에 불과 한데 현재 프랑스의 경우에도 평가 방법을 단순하게 긍정적·중립적·부정적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에 비해서 우리 제도 자체는 실제 감축량을 산정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어서 보다 더 정교한 방식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가 300여 개 정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상당한 정도의 행정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인지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 8400개 이상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감축보다는 배출이라든지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금 경제재정소위에서 상정됐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재정법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해서 방금 말씀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21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기재부 쪽의 의견은 일단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거는 아예 논의해 볼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정착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지금 전 예산에 대해서 하는 데가 프랑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3년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방법론을 하려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반 여건 감안해서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해서 환경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이 제도 자체를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재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한.....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도 똑같이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그게 확대를 하려면 지금 기재

부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선행돼야 될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저희가 확대 필요성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데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시행 성과를 평가해 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말씀이신 거지요?

사실 3년 동안은 어찌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평가한 거기는 한데요. 이대로 계속 유지할 전가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사실 밖에서 의견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들이나 시민단체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해서 제도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3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어서, 그다음에 이게 그동안은 일종의 제도를 정교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축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관계 부처 대상도 계속 확대를 해 왔고 사업 수도 계속 확대를 해 오면서 저희가 일단 이 제도 자체에 이것을 정교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지적되는, 제기되는 의견들은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혹시 어떤 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아마 내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이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적극 반영해 가지고……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특위에서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개정안도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지금 이루어져서 사실 앞의 1항부터 7항까지는 합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좀 진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소희 위원** 24번…… 2개밖에 안 남았지 않았나요, 부칙까지?

○**소위원장 박지혜** 혹시나 또 변동 사항이 있을까 봐……

○**김원이 위원** 될 때 합시다.

○**소위원장 박지혜** 죄송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너무 많은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앞에 7항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변경까지 같이 합의해서 저는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소희 위원 저희 임이자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보류를 말씀하고 가셔 가지고……

○김원이 위원 누구요?

○김소희 위원 임이자 위원님께서 정부조직……

○김원이 위원 이것 정부 출범하는데 어차피 갈 건데……

○김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하자고.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행안위도 다 통과됐고……

○김원이 위원 이거 흔쾌히 해 주는 게 좋지.

○김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굳이 바꿔야 되느냐고……

○소위원장 박지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어차피 합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위원님께서 많이 곤란하시겠지만.

○김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곤란하지만 뭐……

○소위원장 박지혜 감사합니다.

의결 뒤에 유감 표명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부대의견을 다세요.

○서왕진 위원 의견 다시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7항까지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추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의결하시기 전에 부칙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목차 25번입니다.

부칙에 의결 사항들의 시행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명칭 변경은 26년 1월 1일, 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등 의 대표성 반영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의 사업평가 근거 마련, 그리고 용도 추가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이 있어서 1년 후, 그리고 온실 가스 감축목표 미달 시 감축계획 제출의무 부과 등 개정 조항은 6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반영하셔서 의결하시고 그리고 183쪽에 나와 있는 경과 규정과 타법 개정 필요한 부분은 앞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대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도 2026년 1월 1일 괜찮은 건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1항부터 7항까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저희가 21항부터 22항, 24항까지 의견을 듣다가 말았는데요.

○김원이 위원 이것 부칙이네요, 25가.

○소위원장 박지혜 25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끝난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지금 22항은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기재부, 환경부 다 부동의하는 의견이신 것 같고 이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사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용도를 신설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혹시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항 같은 경우는……

○김소희 위원 제 겁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아까 160페이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불안정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의견을 반영한 문구를 가져오셨거든요. 그 의견 반영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지혜 오늘 가능한가요, 그러면?

○김소희 위원 예. 의견 바로 가져오셨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라서……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대안 문구를 한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위원장님, 대안 문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유수영 대안문구 47조 제2항을 앞부분은 같습니다. 뒷부분만 방금 전에, 수정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체 풀 텍스트를 읽어 드리면요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동의하시는가요?

○김소희 위원 예. 저는 그 앞단의 내용을 넣기 위한 거라서.

○소위원장 박지혜 조금 약화된 것 같기는 한데 아쉽지만……

○김소희 위원 뒤에서 농축수산물 관리 거기서 기금을 마련해야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추가로 의결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160페이지의 20항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수정안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마지막 24항 같은 경우……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부처에서 말씀 주신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평가는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교육부 관련해 가지고 대학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실적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나머지는 부처에서 공공기관 제외하고 개정할 필요 있으면 동의하고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여기 지금 교육부 관계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김소희 위원**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내에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는 상위 대학 몇 군데가 좀 있어서……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장입니다.

대학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공립대학 평가 5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서 대학이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 주도로 하고 있다기보다도民間에서 지금 수행하는 기관 평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 관련해서는.

그래서 현재 5년 단위로 저희가 주기를 나눠서 대학 평가 인증을 하고 있고 26년부터 30년까지 4주기 평가 인증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현재 평가 인증에 관련해서 저희가 1년 간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들의 검토를 거쳐서, 공청회들을 거쳐서 이 평가 인증에 대한 지표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에서 어떤 법률로서 새로운 지표를 넣기는 어렵다는 그런 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소희 위원** 민간의 자율 평가 안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대학 쪽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다 하고 있는데 국·공립대학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뭔가 액션을, 한동안 자율에 맡겼는데 자율적으로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법적으로 좀 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여러 내용들이 다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의견을 수렴하고 제가 법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그러면 시·도교육청 평가는 더 추가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김소희 위원** 안 주셔도 됩니다.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봐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160페이지에 있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해당 조문에 저희가 합의를 해서요 한 번만 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가 있으나 방금 심사한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15항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제15항, 이상 5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성희 김소희 김원이 김정호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임이자 조지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환경부

차관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홍성준

